
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양수의원 대표발의, 제5392호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상임이사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해 전문경영을 통한 수산물 판로 확대·소비촉진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, 회원조합·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수협중앙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29조제2항 등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김 성 완)